

대전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1가단1130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8. 18.

판 결 선 고 2022. 9.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3.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2021. 3. 31. 접수 제54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21. 4. 26.부터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카드의 대금 결제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21. 9. 16. 기준 6,047,321원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C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였는데 가정불화로 수년 전부터 별거하였고, 2019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이혼 얘기가 오가다가 2021. 3.경 C가 향후 이혼에 따른 위자료 명목 및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의 취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와 C는 2022. 3.경 협의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었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무엇보다도 먼저 C가 원고에 대한 카드대금 결제를 연체하기 시작한 것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21. 4. 26.부터이고, 피고는 그 이전부터 장기간 C와 별거 중이어서 C의 채무관계 내지 채무초과 상태를 알 수 없었으므로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사해의사 악의의 추정은 반복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또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아니한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아니한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C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실제로는 부부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로서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정하는 협의이혼한 부부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에 해당하며, 피고와 C는 이후 2022. 3.경 실제로 협의이혼하였으므로 위 재산분할협의를 그대로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전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재산분할협의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피고에게 과대한 재산을 귀속시키는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대

별 지 목 록

(부 동 산 의 표 시)

1.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 205.6㎡
(이상 취소할 지분: 지분 205.6분의 23.14)

2.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 141.9㎡

3. 대전광역시 대덕구 ,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주택
 1층 65.64㎡
 2층 49.89㎡
 부속건물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창고
 5.5㎡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변소
 1.44㎡

 (이상 취소할 지분 : 지분 전부)

